

8.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08년 2월 4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08년 2월 4일
- 상정 및 의결
  -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008년 2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함
- 행정정보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상위법 저촉 논란이 있어 온 정보공개 방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제7조제5항은 당초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열거되어 있는 정보공개를 위한 열람, 시청, 사본 공개, 인터넷 공개, 교부의 제한 등에 대한 공개 방법의 결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나, 정보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정보공개 관련 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으며, 또한, 지난 2007년 10월 일부 언론에서 정보공개 방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오히려 상위법률에 위반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 등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온 조항임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상위법의 저촉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인지?	○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상위법 저촉부분을 삭제하는 것임.

5. 토론사항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